

'25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외국어(중어)분야
실기시험 합격자 및 제출서류 공고

2025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외국어(중어) 분야 실기시험
합격자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실기시험 합격자(응시번호순)

□ 외국어(중어)_중부청_남자 : 4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30620008	3	30620015
2	30620009	4	30620016

□ 외국어(중어)_중부청_여자 : 3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30720006	3	30720012
2	30720009		

□ 외국어(중어)_서해청_남자 : 7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30630003	5	30630012
2	30630005	6	30630014
3	30630008	7	30630015
4	30630010		

□ 외국어(중어)_제주청_남자 : 2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30660001	2	30660006

□ 외국어(중어)_제주청_여자 : 3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30760003	3	30760012
2	30760004		

2 제출서류 안내

□ **제출기간** : '25. 11. 14.(금) 10:00 ~ 21.(금) 18:00까지 *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

□ **제출방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 이용

- 제출 서류는 [붙임 1]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의 **목록 순서대로 한 페이지에 한 개의 서류만 포함**되도록 한 뒤,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한 후, 그 PDF 파일을 **압축(zip)하여 제출**(파일명 : 응시번호_응시자 성명)하기 바랍니다.

※ 두 가지의 서류를 한 페이지에 편집 금지(문자인식 불가)

- 제출 기한 내에는 등록된 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으나, 제출 기한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제출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응시 지방해양경찰청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목록

①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 전원 [붙임 1] 작성 제출

② 응시자격 요건 증빙자료

연번	응시분야	제 출 서 류		수량
1	외국어 (중어)	자격증	○ 어학성적증명서(성적표 등) - 新BCT(B) 241점 이상 - 新BCT(B) L&R 801점 이상 - 新HSK 6급 190점 이상 - SNULT(듣기, 읽기) 총점 90점 이상 - FLEX(듣기, 읽기) 총점 850점 이상	1부
		학위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증명서 *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과, 중국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어교육과 <주전공 및 복수전공만 인정(부전공 미인정)> ※ 유사학과(학위)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 전원 제출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전원 [붙임 2] 제출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전원 제출

⑥ 면접 가산 자격증 사본 : 해당자 제출

⑦ 개인정보 제공,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전원 [붙임 4] 작성 제출

⑧ (현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 해당자만 [붙임 5] 작성 제출

⑨ 귀화 전 범죄경력 조회서, 외국국적 포기(상실) 확인서 : 귀화자만 제출

□ 제출 서류별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1) 적성검사(11.22.(토)) 전일까지 가산 자격증 취득 예정인 경우 해당 자격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가산 자격증 없는 경우 '0'점 기재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응시자격요건 증빙자료

1) 자격증 : 중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

- 최종시험예정일('25. 12. 19.(금)) 기준 2년 이내의 유효한 자격증 이어야 합니다.

2) 학위 : 관련전공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성적증명서상 전체과목 중 해당 언어 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 자격요건 인정됨)

③ 주민등록초본(상세)

-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체가 표기되어야 하며, 남자는 병역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2) 공고일('25.9.1.(월))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열람용'은 인정불가)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붙임 2] 참조)

- 1) 신체검사서는 공고일('25.9.1.(월))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2)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개인의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의료정보(병원·약국 찾기)' → '병원·약국 종류별 찾기'에서 종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선택하고, 진료과목은 전체 선택 후 검색(참고용이며 반드시 방문 전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가능 여부 확인)

- 3) **약물검사(TBPE)**는 신체·체력검사 마지막날('25.11.27.) 기준 3개월 이내인 '25. 8. 27.(수)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약물검사는 일주일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검사 항목의 결과는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청력검사 후 정상 판정에 대한 범위(기준 dB) 숫자 표시, 검진기관명, 담당의사 성명, 담당의사 서명은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 5) **색각이상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제출 시 종합병원 등에서 반드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정밀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지,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6)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7) **신체검사서 원본은 최종합격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1) 초졸 또는 중졸인 경우,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 2)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내소재 최종학교(초등중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⑥ 면접 가산 자격증 사본([붙임 3] 배점기준표 참조)

- 1) 자격증 사본은 앞면·뒷면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 발급기관, 성명, 생년월일, 취득(발급)일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 2)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자격취득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3) 가산점은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에 기재된 점수가 아닌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증 사본을 통해 인정되며, 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25. 12. 19.(금))까지 자격이 유효해야 합니다.
- 4) 적성검사 전까지 취득 예정인 자격증은 반드시 총괄표에 기재해야 하고 기재한 자격증에 한해 적성검사(’25. 11. 22.(토)) 시 현장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 5) **외국어능력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25. 12. 19.(금))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 6) 토익시험 성적표의 경우 발급번호(registration number) 16자리를 기재해야 합니다.
- 7)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 시 가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며 채용자격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8) 면접 가산점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가산 점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점수 공개 및 수정 기간(12.12.(금)~12.15.(월))**을 거쳐 확정되며, 공개(수정) 기간 종료 후에는 확인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⑦ 개인정보 제공,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1) 서명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자로 서명해야 합니다.
- 2) 동의서는 두쪽 모아찍기 금지입니다.

⑧ (현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 1) 軍 현역 복무자는 [붙임 5] 「(현역)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1부를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는 현역 복무중인 최종합격자가 교육원 입교일 전에 전역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각 군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 2)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원 입교 전 전역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⑨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향후일정 안내

□ **적성·신체·체력검사** : '25. 11. 22.(토) ~ 11. 27.(목)

- 상세일정 등 안내 사항은 해양경찰청, 각 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25. 11. 14. (금) 10:00경 공지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 '25. 12. 16.(화) ~ 12. 19.(금)

- 상세일정 등 안내 사항은 해양경찰청, 각 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25. 12. 8. (월) 10:00경 공지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총괄표

'25년 하반기 채용 실기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비상연락처)

○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편철 순서	제출대상	제 출 서 류 명	제출여부 (O, X)	비고
1	합격자 전원	응시자격 요건 증빙 서류		
2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반드시 약물검사 (TBPE) 포함		
4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5		면접 가산 자격증(사본) 각 1부		해당자만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군복무자 (현역자)	(현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해당자만
8	귀화자	귀화 전 범죄경력 조회서, 외국국적 포기(상실) 확인서		해당자만

○ 가산점 자격증 : 총 점 (만점 최대 5점 까지만 기재)

연번	자격증 명	자격증(등록)번호	발급(등록)일자	발급기관	가산 점수
1					
2					
3					
4					
5					

위 기재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서명)

붙임 2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시험실시기관	② 응시계급 · 분야	응시번호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청 력	좌: ()dB
	우: ()				우: ()dB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약물(TBPE)검사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반드시 해당 검사를 진행한 병원명 기재)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계급과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예: 경감 변호사, 경위 헬기조종, 경장 함정요원, 순경 공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3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 제9항 관련)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 무도 1·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전자기능장 - 전자계산기·전자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 통신·정보통신·방송 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전자 산업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통신선로 ·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통신기기 ·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 (워드,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2·3 급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기 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기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산업기사	-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산업 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	- 인명구조요원강사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영 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일 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 국 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레 저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 산·어 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업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기사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제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 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 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권투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 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 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 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 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택견보존회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02-420-4293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35-4612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사)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3-7913	(사)대한구조협회	054-476-2119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51-714-3695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협회	02-394-1331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070-5057-3377	(사)복지와 건강	031-943-4447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55-755-780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 '18.11.10 지정취소	063-221-9800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051-404-090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 '23.1.16. 지정취소		* '18.11.17~'22.6.19 지정취소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고객센터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ex)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8.11.9.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사이에 취득한 자격증 인정 X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학력·경력(병역)·자격·면허 등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항, 임용 결격사유,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 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자격증·경력·학위 등)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 기간, 관보계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 공동이용증적 보관)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해양경찰청 귀하

붙임 5

(현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본인 소속 군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 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소속 軍	공무원 채용 관리 (전역 가능 여부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 군번, 계급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최종 합격 시 전역 신청·미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확인 및 동의서

-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군복무중인 현역 응시자에 한해 해양경찰교육원 입교일 전에 전역 가능 여부를 각 군 담당부서에 조회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이 결정된 현역 응시자는 각 소속 군에 규정된 전역신청절차에 따라 본인이 발표일로부터 **3일(공휴일 미포함) 이내**로 전역신청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전역 신청기간 내에 전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입교등록 및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차기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명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연락처 :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032-835-2736, 2436)**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따라 전역 미신청이 확인될 경우 입교 등록 및 임용 포기자로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군별	군번	계급
----	----	----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해양경찰청 귀하